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폐 기 물 의 국 가 간 이 동 및 그
처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과태료 상한액 상향(100→200만원)을 내용으로 「폐기물의국가간
이동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며, 현행 제도의
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 효율성 제고(안 제19조의7 제4항)

- 폐기물 수출입 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
등에게 자료를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나. 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(안 별표 2)

-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
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.

다. 과태료 상한액 상향(100→200만원)에 따라,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
금액 조정(안 별표 3)

-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, 국민
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

라.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사용 명확화(안 별표 4 제4호)

- 환경부장관이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수령액 중 대집행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예탁기관 또는 보험사에 반환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7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별표 2 제1호가목3) 중 “2일 이내에 하역항”을 “14일 이내에 하역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4) 중 “2일”을 “14일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4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환경부장관은 보험금 수령금 중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보증금 예탁기관 또는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3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호 차목·카목·파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7(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 센터의 지정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9조의7(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 센터의 지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법 제 2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1호	100	150	200
나.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2호	100	150	200
다.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3호	100	150	200
라.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4호	100	150	200
마.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장·표지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5호			
1) 포장·표지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		100	150	200
2) 별표 1에 따른 포장·표지부착방법을 지키지 않		50	70	100

은 경우				
바.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32조 제2항제1호	100	200	300
사. 삭제 <2021. 3. 30.>				
아.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2항제2호	300	300	300
자. 법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(법 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32조 제1항제2호			
1)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·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				
가)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, 성질·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·운반하지 않은 경우		300	500	700
나)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,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		500	700	1,000
다)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명,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		200	300	500

라)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 을 수집·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 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	300	500	700
마)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 (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)	300	500	700
바)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흘 날리게 하거나 침출수 를 유출시킨 경우	300	500	700
사)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 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 반한 경우	300	500	700
아) 폐기물 수집·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 고 운반한 경우	200	300	500
자) 그 밖의 수집·운반 기 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 우			
(1)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(지정폐기물은 제외한 다)	300	500	700
(2) 지정폐기물의 경우	400	600	1,000
2)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			
가)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 우			
(1) 1일 이상 1개월 미만	200	400	600

초과 시				
(2)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	400	600	800	
(3) 3개월 이상 초과 시	1,000	1,000	1,000	
나) 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 ·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				
(1) 음식물류 폐기물(사업 장폐기물인 경우로 한 정한다)의 경우	100	200	300	
(2) (1)을 제외한 지정폐기 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	200	400	600	
(3) 지정폐기물의 경우	500	700	1,000	
다)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 관용기(의료폐기물 보 관용기의 경우 「폐기 물관리법」 제13조제2 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)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				
(1) 음식물류 폐기물(사업 장폐기물인 경우로 한 정한다)의 경우	100	200	300	
(2) (1)을 제외한 지정폐기 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	200	400	600	
(3) 지정폐기물의 경우	300	500	1,000	
라)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 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 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 게 작성한 경우	100	200	300	

마)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	100	200	300
바)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			
(1)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(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)	300	500	700
(2) 지정폐기물의 경우	400	600	1,000
3)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			
가)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	500	700	1,000
나)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	400	600	800
다)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			
(1)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	500	700	1,000
(2) 지정폐기물의 경우	500	700	1,000
라)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			
(1)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	500	700	1,000
(2) 지정폐기물의 경우	500	700	1,000
4)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	400	600	800

지 않은 경우				
차.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32조제3항 제6호	100	150	200
카.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	법 제32조 제3항 제6호의2	100	150	200
타.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 제2항제3호	100	200	300
파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한 경우	법 제32조제3항 제7호	100	150	2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생활폐기물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427